

서울서부지방법원

제 1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2가합3111 방송사용보상금
 원 고 사단법인 ♥■■■■■■■■■■
 서◇○○○○○○○○○○○○○○○○○○, 7□■(상○♣, 더♣)
 대표자 이사 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화
 담당변호사 방정환

피 고 1. 채◇▲▲ ♠○○○
 서울 양천구 OO동 _-_
 대표자 이사 전□△
 2. 채◇▲▲ ▶◇◇◇
 서울 동작구 OO동 _-_
 대표자 이사 김♥◇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최정열, 조윤희

변 론 종 결 2012. 11. 6.
 판 결 선 고 2012. 12. 14.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재◆▲▲ ♠○○○는 216,120,714원, 피고 재◆▲▲ ▶◆◆◆은 27,045,943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1. 1. 1.부터 2012. 12.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따른 각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재◆▲▲ ♠○○○는 1,005,913,041원, 피고 재◆▲▲ ▶◆◆◆은 128,372,371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1. 1. 1.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따른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2001. 12. 4.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2002. 1. 1. 문화체육부장관으로부터 구 저작권법(2000. 1. 12. 법률 제6134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65조에 따라 방송사업자가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하는 경우 음반제작자들을 위하여 방송사용보상금 청구권을 행사하고 그 보상금을 분배할 수 있는 단체로 지정받았다. 피고들은

2004. 1.경 피고 재◆▲▲ ▶◆◆◆(이하 '피고 ▶◆◆◆'이라 한다)과 판매용 음반의 방송사용 보상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제3조(판매용 음반의 방송사용에 대한 보상) ① 판매용 음반의 방송사용에 대한 보상금은 피고 ▶◆◆◆이 사단법인 ◆♠♠♠♠♠♠에 지급하는 음악저작권 사용료의 47%로 한다.

제4조(보상금의 지급방법) 제3조 제1항의 조항에 의해 산출한 보상금은 4등분하여 분기별로 지급하되, 매 분기 마지막 달까지 원고가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입금한다.

제5조(보상금의 정산) 피고 ▶◆◆◆과 사단법인 ◆♠♠♠♠♠♠와의 음악저작권 사용료가 정해지지 않았을 때에는 우선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고 음악저작권 사용료가 확정되면 원고와 피고 ▶◆◆◆의 합의 하에 정산한다.

제10조(계약의 유효기간) ①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2002. 1.부터 2004. 12. 31.까지로 한다. 다만 본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원고 또는 피고 ▶◆◆◆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본 계약은 동일조건으로 1년 단위로 자동 갱신된 것으로 본다.

② 협상 지연 등으로 차기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계약 체결시까지 본 계약을 적용하되, 사용료는 새로운 계약에 따라 정산 처리한다.

3) 피고들은 위 각 방송사용 보상금 계약에 따라 2006년분까지 원고에게 방송사용 보상금으로 사단법인 ◆♠♠♠♠♠♠(KOREA MUSIC COPYRIGHT ASSOCIATION, 이하 '____'라 한다)에 지급하는 음악저작권 사용료의 47%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여 왔다.

다. 선행 소송의 진행 경과

1) 원고와 피고들은 2006. 11.경 원고의 2007년분 보상금 협상요청에 따라 보상금 조정을 위한 협상을 시작하였고, 원고가 2006. 12.경 _____에 지급하는 음악저작권 사용료의 68%를 지급하는 것으로 협상안을 제안하였으나 OO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원고는 다시 2008. 8.경 피고들에게 피고들의 전년도 매출액의 2%를 지급하는 수정 협상안을 제안하였으나 역시 OO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2) 이에 원고는 2009. 10. 29. 피고들을 상대로 2007년분 방송사용 보상금은 전년도인 2006. 매출액의 2% 상당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23027호로 2007년분 방송사용 보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1. 9. 16.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할 2007년도 분 방송사용 보상금은 전년도인 2006년 매출액의 0.23%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에게, 피고 ♠○○○는 4,781,174 원, 피고 ▶◇◇◇은 4,867,759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9. 1. 1.부터 2011. 9.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와 피고들은 모두 위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1나91953호로 항소하였고, 원고는 위 항소심에 이르러서는 매출액의 1% 요♡을 주장하였으나, 위 항소심 법원은 2012. 8. 22. 위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2012. 9. 11.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선행 소송'이라 한다).

3) 이에 원고는 2008년분부터 2010년분 방송사용 보상금은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요♡보다 보상금 요♡이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피고들은 종전 2007년분 보상금 요♡에 따라야 한다고 다투게 되어 이 사건 소에 이르게 되었다.

라. 국내 방송사업자의 방송사용 보상금 요♡ 현황

1) 방송사업자들이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원고에게 _____에 대한 음악저작권 사용료 기준 요율로 지급한 방송사용 보상금 지급 수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비고
MBC, KBS, SBS	11.95%	11.95%	11.95%	11.95%	12%	13%	라디오/TV 통합 요율
지역민방	11.95%	11.95%	11.95%	11.95%	협의 중	협의 중	
국군방송				35%	41%	51%	
종교방송	47%	47%	협의 중	협의 중	협의 중	협의 중	라디오
아리랑 FM	47%	47%	47%	47%	63%	63%	
라디오인천			50%	50%	50%	100%	
경기방송	53%	53%	53%	53%	68%	68%	
교통방송	53%	53%	53%	53%	협의 중	협의 중	
국악방송	53%	53%	53%	53%	68%	68%	

2) 원고가 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국내 라디오 방송사, 텔레비전 방송사와 체결한 방송사용 보상금 계약 현황은 다음과 같다.

구분	방송사	2009년 이전		2010년 이후	
		매출액 기준	_____ 기준	매출액 기준	_____ 기준
지상파 라디오	TBS	0.3%	68%	좌동	
	TBN	0.3%	68%		
	아리랑 FM	0.39%	63%		
	국악방송	0.22%	68%		
	YTN 라디오	0.13%	68%		
	종교방송	피고들 불교방송 평화방송	0.18%	47%	
		극동방송	0.11%	47%	

	경인방송	0.38%	100%	0.38%	
	경기방송	0.26%	68%		
케이블 라디오	인천음악방송	4%	200%	4%	200%
	디지털스카이넷	0.4%	50%	4%	200%
	한국디지털오디오방송	0.4%	50%	4%	200%
	이엠미디어	0.4%	50%	4%	200%
지상파 TV	MBC, KBS, SBS	0.3%	68%		
	지역 민영방송사	0.3%	68%		
	교육방송	0.39%	63%	좌동	
케이블 TV	국군방송	4%	200%	4%	200%
	홈쇼핑 방송	0.4%	50%	4%	200%
	음악방송 (케이엠티브이 주식회사 등)	0.4%	50%	4%	200%

3) 2010년 원고의 방송사용 보상금의 매출액 기준 요율은 다음과 같다.

구분	—	협의비율	매출액 기준 원고 요율
MBC, KBS, SBS	0.455%	14%	0.06%
지역 민영 방송	0.455%	14%	0.06%
교육 방송	0.158%	14%	0.02%
종교 방송	0.552%	47%	0.26%
교통 방송	0.621%	68%	0.42%
외국어 방송	0.435%	68%	0.30%
홈쇼핑 채널	0.370%	58%	0.22%
음악 채널	0.936%	60%	0.56%
기타 채널	0.11% ~ 0.72%	14%	0.02% ~ 0.74%
종합유선방송	0.225%	14%	0.032%
위성방송	0.158%	11.95%	0.02%

마. 피고들의 매출액 및 기지급 방송사용 보상금

1) 피고들의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매출액은 다음과 같다.

구분	2007.	2008.	2009.	합계
피고 ♠○○○	37,051,459,560원	36,198,867,930원	29,320,104,450원	102,570,431,940원
피고 ▶◇◇◇	4,896,371,900원	4,659,757,400원	3,603,147,040원	13,159,276,340원

2) 원고는 2008년분부터 2010년분 방송사용 보상금 중 일부로서, 피고 ♠○○○로부터 19,791,279원을, 피고 ▶◇◇◇으로부터 3,220,392원을 각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갑 6, 7호증, 갑 9호증, 을 1호증, 을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① 저작권 선진국에서는 라디오 방송의 경우 통상 매출액의 2%에 해당하는 방송사용 보상금을 지급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지급받는 방송사용 보상금은 외국의 사례에 비추어 지나치게 낮은 요♡(2006년분 이전 _____에 대한 음악 저작권료 기준 47%, 2007년분 매출액 기준 0.23%)에 따른 것인바, 저작권법이 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개정되어 해외 음반제작에 대해서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보상금 청구권이 인정되기에 이르렀으므로 보상금의 요♡ 역시 해외 수준으로 현실화 될 필요성이 있고, ② 국내의 사례를 보더라도 일반적으로 라디오 방송사의 경우 TV방송사보다 높은 보상금 요♡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피고들은 라디오 방송사로서 많은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악 케이블 TV 방송사에 적용되는 요율(매출액 기준 0.504%)보다 낮은 요율을 적용받고 있어 불합리하며, ③ 음반제작자의 보상금은 저작권자의 저작권료와 독자적으로 결정되어야 할뿐더러 원고가 국내 타 방송사업자들로부터 지급받는 방송사용 보상금의 요율은 점차 인상되는 추세에 있는바, 적어도 2008년분 보상금부터는 기존 요율인 매출액의 0.23%에서 인상된 매출액의 1% 요율이 적용되어야 마땅하므로, 피고들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2008년분부터 2010년분까지 3년간의 방송사용 보상금(각 전년도 매출액의 1% 상당 금액에서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들

① 외국과 국내의 경우 음반시장, 방송환경, 정책 및 저작권 법제 등에 있어 차이가 있으므로 외국의 사례를 그대로 국내에 적용할 수 없고, ② 국내 방송사 간에도 각 방송의 특성에 따라 각기 다른 요율이 적용되어야 마땅한데 피고들은 종교방송사로서 방송법상 프로그램 편성에 제한을 받는 등 다른 상업방송사와 다른 종교방송으로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③ 이미 이 사건 선행소송을 통하여 보상금의 요율이 충분히 현실화되었고, 그 후 요율 인상의 요인을 발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내 유사 방송사업자의 사례와 비교하더라도 낮은 요율이라 할 수 없고, ④ 우리 법제상 저작권 접권의 경우 그 성질상 저작권에 비하여 낮은 수준의 보호가 이루어지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매출액의 1% 요율은 지나치게 과도한 것으로 방송사용 보상금의 입법취지에도 반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적어도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하여 왔던 기존 보상금 요율(매출액 기준 0.23%)이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방송사용 보상금 지급의무

방송사업자가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저작권법 제82조 제1항 본문), 그 보상을 받을 권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를 통하여 행사되어야 하는바(같은 법 제82조, 제25조 제5항), 원고가 문화관광부(정부조직법이 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됨으로써 '문화관광부'가 '문화체육관광부'로 변경되었다)장관으로부터 방송사용 보상금 청구·분배를 담당하는 단체로 지정된 사실, 피고들이 원고에 소속된 음반제작자들이 제작한 판매용 음반을 이용하여 방송을 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판매용 음반의 방송사용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보상금의 액수

1) 저작권법 제82조의 취지

방송사업자는 음반제작자가 많은 노력과 시간, 경비를 들여 제작한 판매용 음반을 방송에서 사용함으로써 이익을 얻게 되고, 음반제작자로서도 방송의 홍보·선전효과로 인해 음반 판매량 증가를 기대할 수 있지만, 방송사업자가 판매용 음반을 일반적 사용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오히려 음반 판매를 대체함으로써 음반 판매량에 따라 음반제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해할 우려도 있다. 이에 저작권법은 위와 같은 점 및 방송사업자의 대중매체로서의 중요성과 공공적 기능을 고려하여, 음반제작자에게 실연자의 경우와 달리 배타적인 방송권을 인정하지 않는 대신 방송사업자의 판매용 음반 사용으로 인한 수익 일부에 관하여 채권적 보상금 청구권을 인정함으로써 음반제작자와 방송사업자 사이의 적절한 이익 균형을 도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보상금 산정의 기준

저작권법 제82조 제1항 방송사업자의 '상당한' 보상금 지급의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그 보상금은 원고와 같은 보상금 청구·분배 담당 단체와 방송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저작권법 제82조 제2항, 제75조 제3, 4항), 보상금 산정에 기준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당사자간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부득이 법원이 '상당한' 보상금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바와 보상금 청구권 제도의 취지, 해당 방송사업자의 판매용 음반의 사용 정도, 그로 인한 방송사업자의 이익, 국내 다른 방송사업자들의 보상금 지급 수준, 보상금의 지급액이 저작권자, 저작인접권자, 일반 대중 및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3) 판단

가) 그러므로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이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방송사용 보상금의 요소를 결정함에 있어서 외국의 사례를 참조하기 위하여는, 각국의 저작권 관련 정책, 음반시장과 방송시장의 구조, 규모 및 정책, 관련 산업의 사정 등의 충분하고도 면밀한 검토가 전제되어야 함은 물론, 각국 방송사업자 상호 간에도 각 방송사업의 특성상 여러 가지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점이 고려되어야만 할 것인데, 이에 관한 충분한 비교·검토가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 사건에 있어서 외국의 사례를 판단의 결정적 기초로 삼기는 곤란한 점, ② 원고가 지급받는 방송사용 보상금의 수준이 일정 부분 상향 조정되어 온 것은 사실이나, 방송사용 보상금은 근본적으로 방송사업자와 음반제작자의

상호 이익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방송사업자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일정 요율에 따라 보상금이 정해지는 이상, 그 요율이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상금 요율 자체가 매년 상승되어야 할 필연적인 이유는 없는 점, ③ 그런데 국내 지상파 라디오 방송의 경우 2009년 이전에 원고에게 전년도 매출액의 약 0.11%에서 0.39% 수준의 방송사용 보상금을 지급하여 왔고, 그 중 경기방송, 국악방송의 경우 _____에 대한 음악저작권료를 기준으로 할 때 2007년 기준 요율 53%에서 68%로, 아리랑FM의 경우 2007년 기준 요율 47%에서 63%로 각 요율이 인상되었으나, 2008년 이후로는 68%에서 동결된 점, ③ 피고들은 2006년분까지는 원고 내지 원고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사단법인 ★☆☆☆☆에 기존 방송사용 보상금 계약에 따라 _____에 대한 음악저작권료의 47% 상당을 지급하여 왔고 이를 매출액 기준 비율로 환산하면 전년도 매출액의 약 0.182%에 해당하며, 원고가 피고들을 제기한 이 사건 선행 소송에서는 피고들의 2007년분 방송사용 보상금을 전년도 매출액의 0.23%로 정하였고, 이를 _____에 대한 음악저작권료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68%에 해당하는바, 이미 이 사건 선행 소송을 통하여 보상금 요율이 상당 부분 인상됨으로써 보상금 현실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다른 라디오 방송사의 사례와 비교하여 볼 때 위 매출액 기준 0.23%의 요율이 현저히 낮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더구나 피고들은 종교방송사로서 다른 상업방송사와 달리 방송시간의 60% 이상을 선교 프로그램으로 편성하여야 하는 제약이 있을 뿐만 아니라(방송법 제69조 제4항, 방송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1호), 다른 지상파 라디오 방송사와 비교하면 그 청취율 역시 높다고 할 수 없는 점, ⑤ 원고는 라디오 방송사로서 판매용 음반 사용이 많은 피고들에 대하여는 적어도 음악 케이블 TV 방송사인 케이엠티브이 주식회사(이하 '_____'라 한다)

에 적용되는 매출액 기준 0.504% 이상의 요♡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하나, 피고들의 판매용 음반 사용이 음악방송을 전문으로 하는 위 ____의 경우보다 많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피고들의 종교방송사로서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피고들의 요♡이 반드시 그보다 높아야 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⑥ 저작권법이 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개정되어 해외 제작 음반에 대해서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보상금 청구권이 인정되었고 이로써 해외 음반제작자들이 원고 협♠에 등록된 보상금 원수가 급증하였다고 하더라도, 방송사용 보상금은 어디까지나 방송사업자가 판매용 음반을 방송에 사용함으로써 얻는 수익의 일부를 음반제작자와 분배함으로써 상호간 이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임을 고려할 때 그러한 사정만을 들어 방송사업자인 피고들의 이익 증가 여부와 무관하게 보상금 요♡을 상향 조정할 수는 없는 점(피고들은 종교방송사로서 해외 음반의 사용 비중이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히 피고 ▶◇◇◇의 경우에는 국내곡 우선 편성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⑦ 국내 오프라인 음반 시장이 붕괴됨으로써 음반제작자들의 음반 제작·유통으로 인한 수익이 현저히 감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시장 환경의 변화는 디지털 음원 매체 및 온라인 음원시장의 발달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고 방송사업자의 판매용 음반 사용 증가에 기인한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제도적 취지를 전혀 달리 하는 방송사용 보상금의 인상으로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타당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⑧ 원고는 평화방송, 불교방송 등 다른 종교방송사뿐만 아니라 TBN(♣♠♠♠공단), TBS(교통방송)도 이 사건 소송 결과에 따라 결정된 요♡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특히 TBN, TBS의 기존 요♡은 매출액 기준 0.3%로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기존 요♡ 매출액 기준 0.23%를 유지할 경우 기지급 보상금의 회수 및 반납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하

는바, 물론방송사용 보상금의 액수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방송사업자들에 미치는 영향 등도 고려 대상이 되는 것이기는 하나, 원고 주장과 같은 문제는 원고가 위 방송사들과 그러한 내용으로 약정하였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일 뿐, 방송특성이 다른 위 방송사업자와 사이에 장래에 결정될 요율을 고려하여 종교방송사인 피고들에 대한 보상금 요율을 결정할 수도 없는 점, ⑨ 비록 이 사건 선행 소송의 1심 법원이 2008년분 이후의 방송사용 보상금은 협의에 따라 상향될 여지가 있다고 판시하기는 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이후 특별히 위 매출액 기준 0.23% 요율이 인상되어야 할 요인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2008년부터 2010년분까지의 방송사용 보상금은 이 사건 선행 소송에서 결정된 요율에 따라, 각 전년도 매출액의 0.23%를 적용하여 정함이 상당하다.

나) 따라서 전년도 매출액의 0.23%를 적용하여 피고들의 2008년부터 2010년분까지의 방송사용 보상금을 계산하면, 피고 ♠○○○의 경우 235,911,993원(=2007년부터 2009년까지 매출액 합계 102,570,431,940원 × 0.23%, 계산 편의상 원 단위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피고 ▶◇◇◇의 경우 30,266,335원(=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매출액 합계 13,159,276,340원 × 0.23%)이 되고, 원고가 2008년부터 2010년분까지의 방송사용 보상금의 일부로서, 피고 ♠○○○로부터 19,791,279원을, 피고 ▶◇◇◇으로부터 3,220,392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원고에게, 피고 ♠○○○는 216,120,714원(=235,911,993원 - 19,791,279원), 피고 ▶◇◇◇은 27,045,943원(=30,266,335원 - 3,220,392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각 보상금 지급 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1. 1. 1.부터 피고들의 각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2. 12. 14.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예지희
	판사	김용규
	판사	이유빈